

1.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안 제2조, 제3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각각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분석하도록 함

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안 제5조)

도로구조 및 도로요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과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 2)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보수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보수,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보수, 도로표면의 포장,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보수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지 서식 포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는 것은 도로교통정보, 정밀도로지도 정보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인지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밀도로지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란 지형 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한 전자적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을 말한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게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을 포함하는 도로구조

가. 차로 수

나. 차로의 폭

다. 차로 표시

라.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마. 평면곡선의 길이

바.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및 그 변화도

사. 평면곡선부의 확폭

2.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등의 도로요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한 경우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면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고지

가. 기점 및 종점의 자율주행 안전구간에 관한 도로표지의 게시

나.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의한 고지

다.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한 정밀 도로지도의 제공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한 정밀 도로지도의 제공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
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한 경우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필

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3.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2.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3.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4. 운행구역 및 운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정운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3.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2.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3.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4.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5. 운임

6.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2.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2.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3.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4. 운행구역 및 운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이란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운전

자 또는 승객의 조작 또는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적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 계획서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9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보수
2.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보수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보수

②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규제확인 신청서
2.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계획서
3.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4.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시범운행하기 위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규제 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와 같다.

제11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①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의 자동차관리관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 제13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

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둔다.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는 매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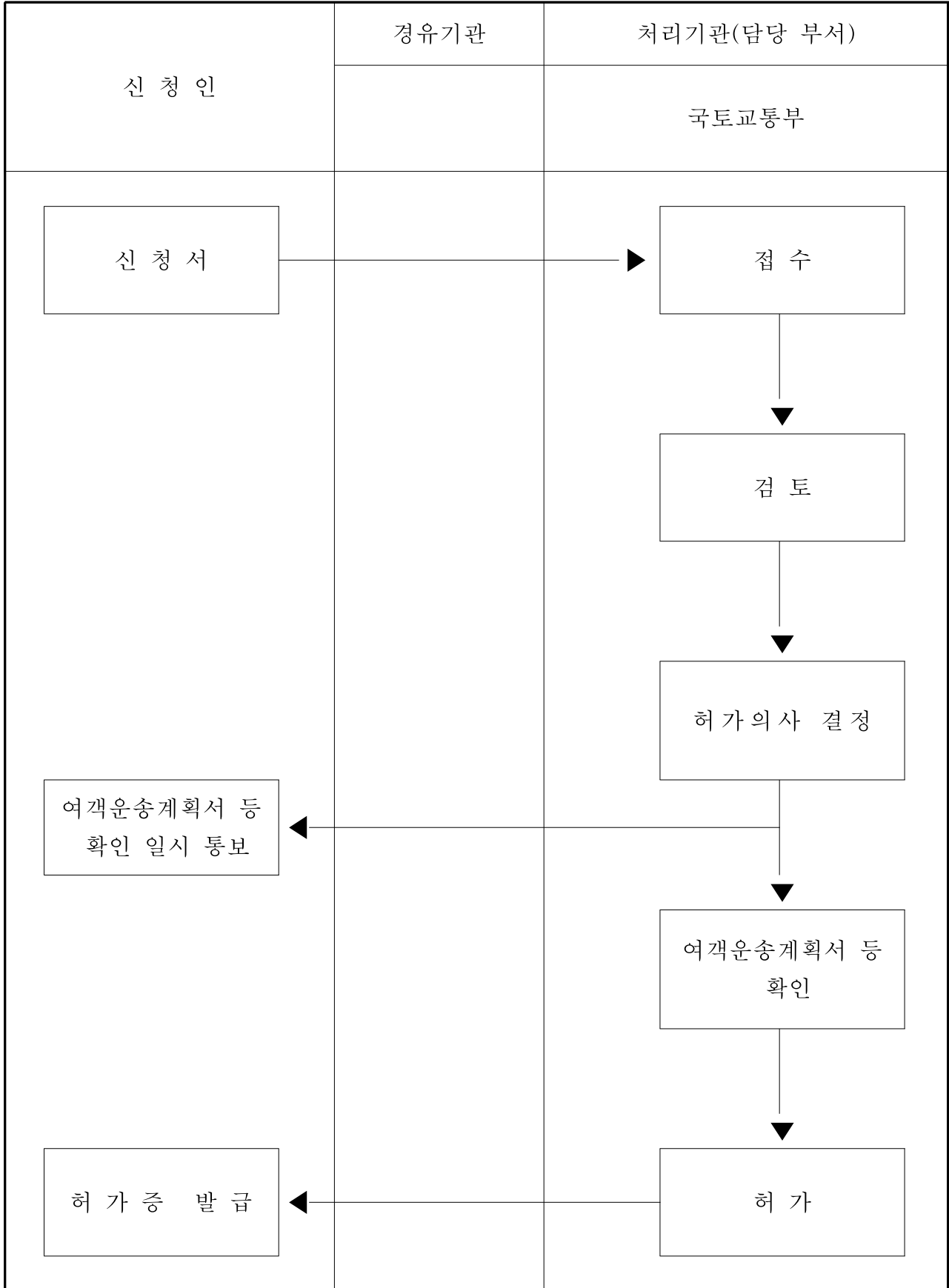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여객운송 예정구역				
⑤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⑥ 여객운송의 범위 또는 기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용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2. 자가용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 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승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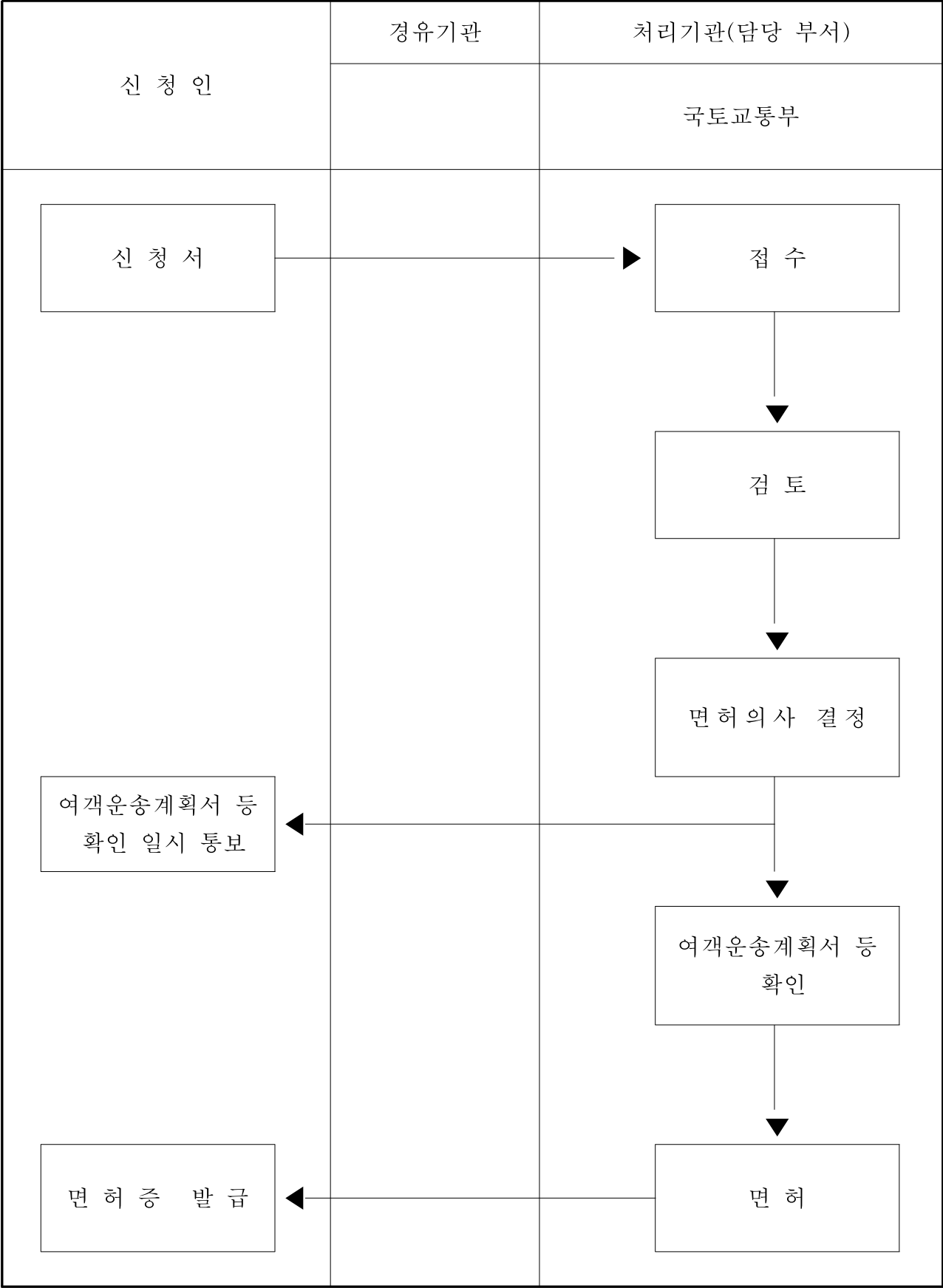
(뒤 쪽)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여객운송 예정노선				
⑥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여객운송의 범위 또는 기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 · 도 지 사				
첨부서류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승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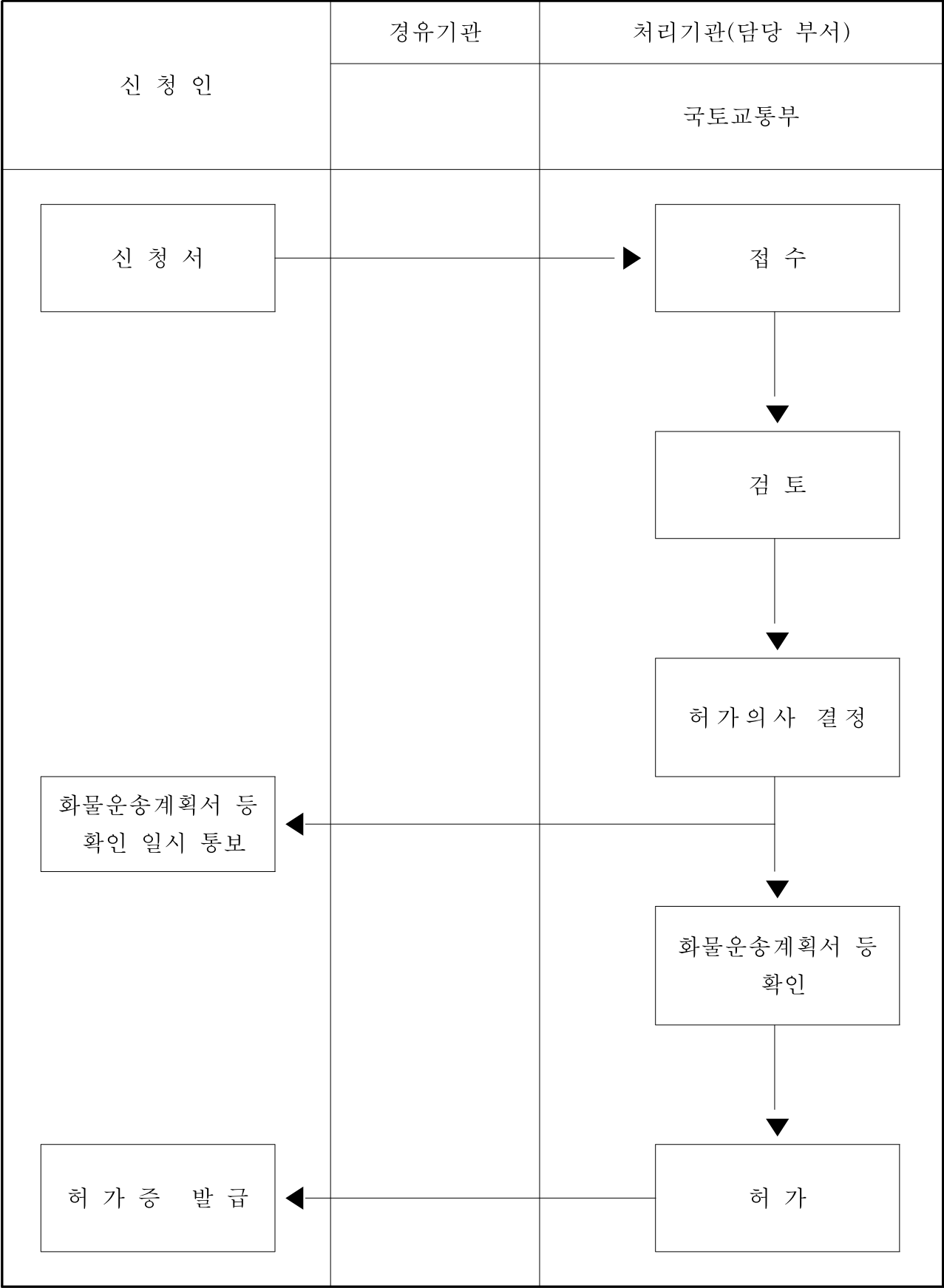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화물운송 예정구역				
⑤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⑥ 화물운송의 범위 또는 기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2.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승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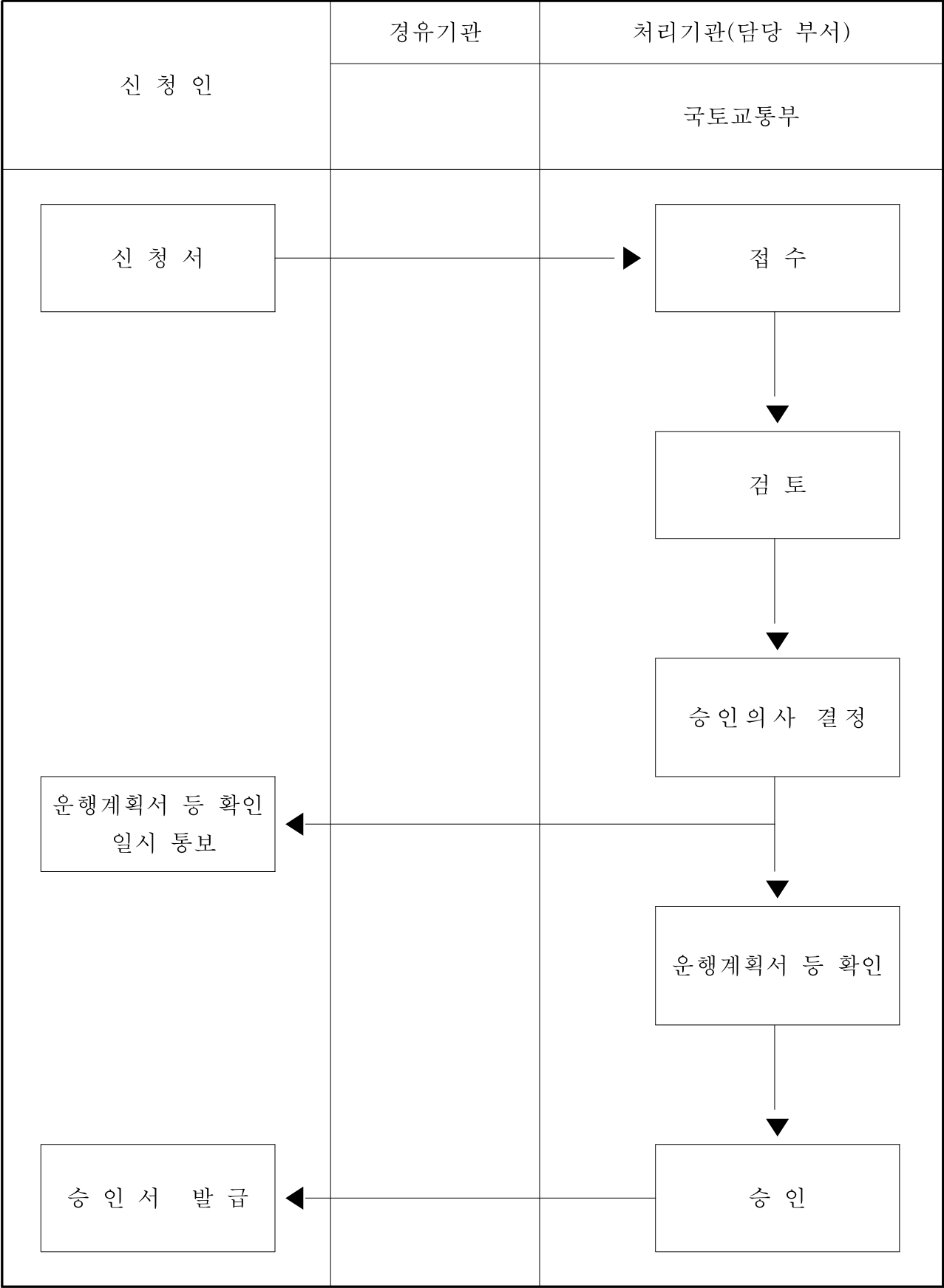
(뒤 쪽)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신청사항	④ 차종		⑤ 차명	
	⑥ 차대번호			
	⑦ 운행목적			
	⑧ 운행기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범운행지구 운행 계획서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을 할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1.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승인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취소를 감수할 것 3.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 명령에 따를 것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